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6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권향엽 · 조계원
김준혁 · 장종태 · 양부남
정진욱 · 이주희 · 황명선
이광희 · 이수진 · 임미애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유치원 민원의 정의,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, 준수사항 미이행 시 조치사항, 민원처리 기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이에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,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며,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·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유치원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, 직원의 업무 및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).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6 및 제2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6(유치원민원의 정의 등) ① “유치원민원”이란 보호자가 유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제21조의3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
2.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
3. 그 밖에 유치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

② 유치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「교육기본법」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「형법」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유치원민원 제기 과정에서 같은 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7(유치원민원의 접수와 처리) ① 유치원민원의 접수·처리를 위하여 유치원(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은 제외한다)에 민원대응팀을 두며, 유치원민원의 접수·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유치원의 지도·감독기관(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, 공립·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. 이하 “관할청”이라 한다)에는 유치원민원대응지원팀 등 유치원민원대응기구를 둔다.

② 관할청은 유치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원장은 유치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유치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치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유치원의 지도·감독기관(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, 공립·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. 이하 “관할청”이라 한다)은”을 “관할청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1조의6(유치원민원의 정의 등)</u></p> <p>① “<u>유치원민원</u>”이란 보호자가 유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제21조의3에 따른 유아생활 지도에 관련된 요구</u> 2. 「<u>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4호의 <u>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</u> 3. <u>그 밖에 유치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</u> <p>② 유치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「<u>교육기본법</u>」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「<u>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</u>」 제19조에서 정한 <u>교육활동 침해행위</u> 또는 직원에 대한 「<u>형법</u>」 제314조에 따른 <u>업무방해행위</u>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<u>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유치원민원 제기 과</u></p>

<신 설>

정에서 같은 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7(유치원민원의 접수와

처리) ① 유치원민원의 접수·처리를 위하여 유치원(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은 제외한다)에 민원대응팀을 두며, 유치원민원의 접수·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유치원의 지도·감독기관(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, 공립·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. 이하 “관할청”이라 한다)에는 유치원민원대응지원팀 등 유치원민원대응기구를 둔다.

② 관할청은 유치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원장은 유치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

제30조(시정 또는 변경 명령) ①
유치원의 지도·감독기관(국립
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,
 공립·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
 교육감을 말한다. 이하 “관할
 청”이라 한다)은 유치원이 시
 설·설비, 교육과정 운영, 유치
 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
 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,
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, 제53조
 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
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
 원장 또는 그 설립·경영자에
 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
 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유치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
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
 치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
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
 으로 정한다.

제30조(시정 또는 변경 명령) ①
관할청은-----

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